

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/3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0. 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세분화 및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 변경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상에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 조례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며,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함

2. 주요골자

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(84. 1. 7.)는 이를 폐지한다.

※ 폐지되는 조항

가. 제1조(목적) ~ 제15조(세부규정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기 타 :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사본~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● 평창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 [1977. 11. 15]
[조례 제370호]

개정 1984. 1. 7 조례 제89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입주자의 선정)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(분양 또는 임대)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률상의 원호대상자(독립유공자, 월남귀순자, 군사원호대상자)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3조(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)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 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입주자의 모집) 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계시 공고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, 주택의 소재지 규모,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신청자 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주금)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음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입주보증금) 입주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% 이내로 한다.

제7조(분양 또는 임대계약) ①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8조(주택의 관리)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용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.

②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)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.<개정 84·1·7>

제10조(임대기간)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(입주자의 행위제한)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
2.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
3.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
4.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

제12조(관리인) ①사업주체는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
2.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
3.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계약의 해제)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분양 또는 임대계약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
2. 제11조의 제한행위를 승인없이 행할 때
3.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

제14조(손해배상) 입주자(분양 또는 임대계약자)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

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세부규정)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규정과 본 조례의 범위안에서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공영주택관리조례(조례 제123호 : 1967. 7. 8)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행한 처분 및 그 결차동은 이 조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84·1·7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